

문서번호	BSKS-1-1-45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/5

2020.03.03.제정 2020.06.19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12.20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(시험), 제42조(추가시험), 제43조(성적), 제44조(성적의 취소), 성적평가 규정(BSKS-1-1-14)에 의거하여 출결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허용 범위) 본교 출결관리에만 적용하며,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출석 처리 방법) 본교의 출석은 '전자출결시스템'을 활용하여 하며, 학생·교수별 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.
  - ① 학생은 매 시간 자신의 출석현황을 '전자출결시스템'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며, 잘 못 기재된 경우 담당교수에게 출결사항변경신청서[별지서식 1호]를 통하여 성적정정기간 마감 전까지 출결사항수정을 요청하여야 하고, 담당교수는 합당한 사유라 판단될 경우 출결사항을 변경한다. 담당교수는 조치결과가 기록된 출결사항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, 교무처는 이를 5년간 보관한다. <개정 2020.06.19., 2020.09.25>
  - ② 교수는 매 수업시간 시작 15분 이내로 '전자출결시스템'의 '자동출결'을 통하여 출석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수는 매 시간 '전자출결시스템'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, 입력하여야 한다.
  - ④ '전자출결시스템'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'수동출석체크'를 활용하여 출석여부를 확인,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  - ⑤ 교수는 '수동출석체크'를 활용하는 경우, 해당일 수업에 대한 출석체크는 수업이 있는 당일에 완료하여, 학생이 자신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  - ⑥ 수업 당일의 출석이 '미출결'로 표출되는 경우, '전자출결시스템 미활용 사유서'를 작성, 미출결 발생 3일 이내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출결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. 단, 교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매 학기 1주 ~ 3주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사유서를 제출 받지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9., 2020.09.25>
  - ⑦ 교수는 해당 수업의 결석일수가 2주 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'알림 메시지' 등의 기능을 통하여 출석을 독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
제4조(출결사항) 출결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5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2/5

- ① 출석 O, 결석 /, 지각 X, 조퇴 (x) 로 표기한다.
- ② 출석은 출석확인 시, 학생이 출석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80% 이상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③ 지각은 출석확인 이후 학생이 출석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50% 이상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④ 조퇴는 해당수업시간에 50%이상, 80%미만 참여 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⑤ 결석은 학생이 해당 수업시간에 50%미만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⑥ 본교에서 지정한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정정하여 정정기간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며, 학생의 복학시점 이전의 수업시간에 대해서 또한 결석으로 처리한다. <신설 2020.06.19.>
- ⑦ 조기 취·창업자의 출석인정은 본교 조기 취·창업자 학점인정 관리규정(BSKS-1-1-41) 을 따른다. <신설 2020.06.19.>
- 제5조(지원) 본교에서는 원활한 '전자출결시스템'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지원한다.
  - ① 교무처에서는 원활한 '전자출결시스템'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학기 1회 이상의 교수 및 학과 행정직원 대상의 집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25.>
  - ② 학과에서는 교원(전임교원, 겸임교원, 강사 등)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매학기 1회 이상 전자출결시스템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9.>
  - ③ 각 학과 행정직원 및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매 학기 1회 이상 전자출결시스템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9.>
  - ④ 위의 각 항에 해당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, 교무처로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6.19.> <개정 2020.09.25.>
- 제6조(상벌) ① 매학기 '전자출결시스템 미활용 사유서' 제출 2회 시 '주의' 조치, 3회 시 '경고' 조치, 4회 이상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 규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. 단, 미이행 누적 기간은 교원의 임용기간으로 한다. 또한, '주의' 조치 내역은 교수업적평가의 정성평가에 반영한다. <신설 2022.12.20.>
  - ② 매 학기 말, 우수 운영학과를 선정하여 시상 및 발표에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6.19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5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3/5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5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4/5

[별지 서식 1호] - <표 신설 2020.06.19.>

## 출 결 사 항 변 경 신 청 서

소속학과					학년					반		
학번					성명							
			출	결 시	가 항 변	경	내	용				
교과목	교과목명 수강 학점 요청일자 교시(시간) 담당교수 학년/반							교수				
변경신청	사유 :											
<u> </u>	 20 학 <sup>1</sup>	 년도	 학기 상기	 기 교 <sup>3</sup>	 과목에 대	하ㅇ	 네 출	 ·결사항	 변2	 경을 신청합 <sup>1</sup>	 니다.	
	,		, , ,			,		_ , ,			, , ,	
				년	월		일					
	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
	연락처 :											
					<u>E-</u>	ma	il :					
			내용 :									
	변경신 조치결		조치	결과 년	통보방법				3	스치결과 통보	<sup>보일자</sup>	
교과목												
담당			변경	전 출	들결내용				1	변경 후 출결	<u> </u> 내용	
교수	정정사	ठें}-										
	소속 학과 :					명	:		( X-	명 또는 인	)	
[ 0 0] 2] 동].]	1											

#### [유의사항]

- 1. 출결사항변경신청서 접수와 조치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정정기간 마감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2. 성적정정기간 이후에는 출결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.
- 3. 변경된 최종 출결현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5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5/5

[별지 서식 2호] - <표 개정 2020.06.19., 2020.09.25>

전자출결시스템 미활용 사유서						
소속		성명				
교과목명		학년/반				
일자		교시(시간)				

※ 미출결 발생 3일 이내로 제출하여 함 사유

2000.00.00

소속: 000000000

성명: 00000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